

# 2021. 7. 6. 보도자료

공보관실 02)708-3411 / 팩스 02)766-7757



## 제 목 : 7월 8일 변론 안내

□ 헌법재판소는 오는 7. 8.(목) 14:00, 16:30 대심판정에서 아래 사건에 대한 변론을 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 번	사건번호 및 사건명		청구인 (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피청구인 (대리인)	시 간
1	2018헌바433, 2019헌가22 (병합)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의료법인 ○○재단 (법무법인 반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외 1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외 5)	14:00
2	2021헌라1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남양주시 (이명웅)	경기도 (이승엽 외 1)	16:30

붙임 : 관련사건 보도자료 2부. 끝

# 보 도 자 료

## 국민건강보험법상 지급보류제도 등에 관한 사건

(2018헌바433등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 [ 변 론 ]

헌법재판소는 2021년 7월 8일(목) 14:00 대심판정에서, 2018. 11. 2. 접수된 2018헌바433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 및 2019. 7. 11. 접수된 2019헌가22(병합)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위헌제청 사건의 변론을 열 예정이다.

이 사건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에 관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확인된 경우 공단이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4. 5. 20. 법률 제12615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쟁점인 사안이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의 변론을 들은 뒤, 위 법률조항 등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2021. 7. 6.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 사건개요

- 제청신청인 겸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함)은 ○○도지사로부터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의료법인으로서, □□병원에 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다.
-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는 청구인이 비의료인에 의하여 적법한 의료법인의 설립을 가장하여 형식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이라고 보고, 2017년 청구인의 이사장 등 관련자들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고, 위 공소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통보하였다.
- 공단은 2017. 11. 30. 청구인에게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함)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원을 지급보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하였다. 공단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지급을 보류한 위 ▲▲원을 포함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합계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청구인은 2017. 12. 13. ◆◆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와 함께 지급보류된 요양급여비용과 이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8헌바433).
- 제1심 법원은 2018년 이 사건 처분의 취소와 함께 공단이 청구인에게 지급보류된 요양급여비용과 이에 대한 이자 등 합계 ★★원 상당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공단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제2심 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의 위헌 여부가 위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헌이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2019. 7. 3.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2019헌가22).
- 한편, 앞서 살펴본 관련 형사사건 제1심 법원은 2018년 7월 청구인의 이사장 등 관련자들에 대하여 ‘의료법은 의료법인의 임원 자격을 의료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고, 의료법인이 외형상으로는 적법하게 설립되어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의료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비의료인의 개인사업에 불과하다는 평가에 이르지 않은 이상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와 같은 판결은 검사의 항소, 상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의료기관의 개설 주체를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이하 ‘의료법인’이라 함)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고, 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3호(이하 ‘이 사건 개설금지조항’이라 함),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 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4. 5. 20. 법률 제12615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개설금지조항과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함)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 [심판대상조항]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고, 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구 국민건강보험법(2014. 5. 20. 법률 제12615호로 개정되고, 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제4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

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 주요 쟁점

-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확인만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이 공단으로 하여금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 청구인의 주장 요지<sup>1)</sup>

-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되었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

## □ 이해관계인 공단의 주장 요지<sup>2)</sup>

- 공단은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이 입법화되기 전에도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이 사건 개설금지조항 위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항으로서, 청구인과 같은 요양기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이 아니라 오히려 요양기관에 대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공단은 그 자체적인 판단으로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이 없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사무장병원은 법정 요건 미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이

1) 대리인 법무법인 반우 이인화, 김주성, 정혜승 변호사

2) 대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임현정, 이윤석, 한효명, 조병기 변호사, 법무법인(유) 총정 목근수, 김시주, 조성환, 박은지, 이동진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이정미, 정병실, 김형진, 안현성 변호사.

사건 지급보류조항으로 인하여 사무장병원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에 따라 지급보류되는 금액은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 부담금에 한하고, 법원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것도 가능하며, 법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확인 및 요양기관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 각종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마련하여 공단의 재량권 남용 가능성을 막고 있고,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거나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 처분에 한정)이 있을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손해를 전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보류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보 도 자 료

## 남양주시 자치사무 감사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2021헌라1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 [ 변 론 ]

헌법재판소는 2021년 7월 8일(목) 16:30 대심판정에서, 2021. 5. 6. 접수된 2021헌라1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사건의 변론을 열 예정이다. 위 사건은, 피청구인 경기도가 청구인 남양주시에게 ‘2017. 7. 19. 이후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사전조사 및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통보하고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 한 것이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의 변론을 들은 뒤, 그 인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2021. 7. 6.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 사건의 개요

- 피청구인 경기도는 2021. 4. 1. 청구인 남양주시에 ‘경기도 종합감사(남양주시) 실시계획 알림’(이하 ‘이 사건 감사계획’이라 한다)을 통하여 ‘2017. 7. 19. 이후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사전조사(2021. 5. 20. ~ 26.) 및 감사(2021. 5. 27. ~ 6. 11.) 실시 예정임을 알리고, 자치사무 전반에 관한 자료 등을 요구서식에 따라 2021. 4. 23.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 청구인 남양주시장은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자료 제출요청이 법령위반사항을 특정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자치사무에 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 사건 감사계획 중 자치사무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5. 6.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 피청구인은 감사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21. 5. 26. 이 사건 감사계획에 따른 절차 진행을 중단하였다.

###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1. 4. 1. 청구인에게 통보한 ‘경기도 종합감사(남양주시)실시계획 알림’(경기도 감사담당관-3234호) 중 청구인의 자치사무에 관한 부분이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이다.

## □ 청구인 남양주시의 주장요지

-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관한 것에 한정되며, 피청구인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그런데 ① 이 사건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는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 혹은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개시하는 감사에 해당하고, ② 피청구인이 사전조사



명목으로 청구인의 자치사무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행정감사규정 제7조 제2항에서 허용하는 사전조사의 범위를 초과하여 위법하며, ③ 이와 같은 포괄적인 사전조사는 결국 헌법재판소가 헌재 2009. 5. 28. 2006헌라6 사건에서 그 위헌성을 확인한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편법적인 수단이다.

- 따라서 ‘2017. 7. 19. 이후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자료제출 및 사전조사·감사 절차를 예정하는 이 사건 감사계획 중 자치사무에 관한 부분은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다.

## □ 피청구인 경기도의 주장요지

- 이 사건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 중 자치사무에 관한 부분에 관한 절차는 모두 중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 종합감사는 자료제출 - 사전조사 - 감사 순서로 진행되는바, 자료제출 단계에서는 감사 개시 시와 같은 정도로 구체적 법령위반행위를 특정할 필요가 없어 법령위반의 의심이 없는 경우에도 자료제출요청이 가능하고 헌법재판소 2006헌라6 선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전조사 결과 발견된 법령위반사항만 나아가 감사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이 사건 감사계획에 따른 절차는 법령의 범위 내의 적법한 것으로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 주요 쟁점

- 이 사건 감사계획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치사무 전반에 관한 포괄적 자료제출 요청을 하고,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감사대상을 발굴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지 여부

## □ 청구인 및 피청구인

### ○ 청구인

남양주시

대표자 시장 조광한

대리인 변호사 이명웅

### ○ 피청구인

경기도

대표자 도지사 이재명

대리인 변호사 이승엽, 이소론